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4. 8.(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39호
- 제출일: 2025년 3월 21일
-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책무등·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고용의 촉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달성군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① 수급자+한부모가족 ②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보고서¹⁾상 한부모 가구는 일반 가구의 6.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광역조례 지원사업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상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시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요약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출산전 임신부 및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의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1)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37호
- 제출일: 2025년 3월 21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많은 지자체에서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예우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인정과정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대구 달서구·남구에서 “의로운 구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광역에서 제정된 사항에 대한 유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무에 대해 각자 조례 및 규칙을 정하기에 양자 간의 모순·저촉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 본 조례안에의 규정하고 있는 위로금·예우 사항은 현행 광역 및 인근 타 자치구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위로금 지급 범위	예우 사항
대구광역시	1인당 2천만원 이하	포상 / 행사초청 / 추모식·비 건립등 선양사업 / 향토지 공적 게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당 1천만원 이하	포상/ 행사초청 / 추모식·비 건립등 선양사업 / 홈페이지 공적 게재
대구광역시 남구	1인당 1천만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당 5백만원 이하	포상 / 행사초청

- 전문성을 담보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로운 군민 등의 인정신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46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1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활성화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농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현황²⁾에서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명 가량이며, 이중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45만여 명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약 18% 가량입니다. 달성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4년 기준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등록장애인수의 약 23%(2,918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계	5,045	1,131	1,045	2,795	123	1,259	226	698
13,044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465	24	45	75	24	66	23	

자료: 사회복지과

- 광역 및 인근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명	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전국 평균 대비 농인들이 많고 ▲인근 자치구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안 조문 등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행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보건복지부 정보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2023. 12월말 기준)”, 2024. 12. 28.